

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 (제37조제1항 관련)

1. 지역별 가중치

가. I 지역(상수원보호구역): 1.1

나. II 지역(수변구역): 1.0

2.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

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=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$50/100 \times (\text{해당 지역의 면적} \times \text{해당 지역의 가중치}) \div \{(\text{I 지역의 면적} \times 1.1) + (\text{II 지역의 면적} \times 1.0)\}$

비고: "해당 지역"이란 I 지역, II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3.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

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=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$50/100 \times (\text{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}) \div (\text{I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} + \text{II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})$

4. 배분액 산정방법

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